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6월 18일, 권영세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6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9.3.) 상정, 축조심사, 의결
(수정가결)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9.9.) 상정, 제안설명, 대
체토론,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권영세 의원)

현행법은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 방송 및 이동식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대상, 기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방법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의 집행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재난방송 등을 수신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범위, 설치의 기준 및 조사의 방법·절차 등 제도 운용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방송 등의 수신시설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 개정안은 재난방송 등을 수신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범위, 설치의 기준 및 조사의 방법·절차 등 제도 운용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방송 등의 수신시설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대상의 범위·설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취지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예산 지원 대상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취지라면, 방송통신설비의 설치대상의 범위·설치기준보다는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 지원 대상의 범위·설치 지원 기준”으로 법문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현)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방송 등을 수신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지원 대상의 범위와 지원 기준 및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와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붙임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9.

제 안 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재난방송 등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설치되는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 지원 대상의 범위와 지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문구를 수정함(안 제40조의3제3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0조의3제3항 중 “설치대상의 범위·설치기준”을 “설치 지원 대상의 범위·설치 지원 기준”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①·② (생략) <신설>	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대상의 범위·설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 지원 대상의 범위·설치 지원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 지원 대상의 범위·설치 지원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 의 설치) ①·② (생 략) <u><신 설></u>	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 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 지원 대상의 범위·설치 지원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조 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